

#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 가 운영 목적

통하여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자원봉사를 통한 다양한 경험과 삶의 보람을 체득하도록 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한다. 봉사하는 생활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학교·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바른 봉사태도를 육성하기 위함이다.

## 나 운영 방향

학생 봉사활동은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교장이 허가한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학교단위 봉사활동을 내실화하고, 가족단위 사회봉사활동을 활성화한다. 교사·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봉사활동 교육시스템을 운영하며, 사제동행의 실천을 원칙으로 사전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학생들 스스로 계획을 수립·실천하고, 반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의 인성 함양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봉사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 다 운영 방침

- 1) 「학교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 2) 학생 봉사활동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며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되도록 한다.
- 3) 학생 봉사활동은 발달단계와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시간 수 확보보다 활동의 내실에 충실하도록 한다.
- 4) 봉사활동의 영역은 지역여건과 학교실정에 맞도록 학교에서 정한다.
- 5) 개인 봉사활동은 실적위주의 봉사활동을 지양하고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에 목적을 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6) 효율적이며 진정한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하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7) 『학교생활기록부관리지침』에 의거하여 봉사활동 상황 기록 활동이 확인되면 빠른 시일 내에 담임교사가 영역별로 활동내용, 횟수, 활동시간 등을 기록한다.
- 8) 봉사정신을 내면화 할 수 있도록 훈화사전교육 등의 교육을 수시로 실시한다.

## 라 학생 봉사활동 시간 운영 및 인정

- 1) 시간 운영
  - 가) 학생 봉사활동은 중학교의 경우 15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
  - 나) 봉사활동 실적 성적은 1, 2, 3학년 3개년 동안 봉사활동 실적 15시간을 기준으로 내신점수 20점을 부여한다.
    - 1)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의 봉사활동은 연간 10시간 이내로 편성하고 개인별보다는 단체별(학년, 학급, 그룹)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실적의 인정**

- 나) 봉사활동 확인서는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명의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실무담당자의 실인도 인정한다. 실인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는 담임교사의 확인에 의해 학교봉사활동추진위원장의 실인으로 조치할 수 있다.)
- 나) 학교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봉사활동의 실적은 학교장이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다)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은 물론, 개인에 의한 봉사활동까지 그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 라) 학년 초에 시행하는 봉사활동 관련 사전교육은 봉사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봉사활동 1시간으로 인정한다.
- 마) 봉사활동 사전 교육만 실시한 경우는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되, 내용 란에 그 사실을 기록한다.
- 바)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같은 종류의 봉사를 지속적으로 한 경우는 학기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기록한다.)
- 사)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에 의한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아) 봉사활동의 적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단순한 선행활동이 봉사활동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자) 영리 업체, 미성년자 출입 제한 업소 등은 봉사활동 대상에서 제외한다.
- 차) 시간 부풀리기, 허위 확인서, 행사에 학생을 동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실적 인정의 판단이 애매한 경우는 「학교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교육적인 입장에서 판단하여 결정하며, 협의 내용은 반드시 협의록에 기록하여 결재·보관한다.)
- 카) 봉사활동 시간 인 증은 **1일 8시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면 1시간, 6교시면 2시간, 4교시면 4시간, 휴업일(공휴일)이면 8시간 이내를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한다.
  - ※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 시간을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현장 도착	준비/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 후 휴식	현장 출발	도착	귀가
인증	×	×	인정 가능 시간 내용				×	×	×	×

-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3) **봉사활동 내용별 인정 기준**

- 가)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전송된 봉사활동의 인정
  - 사전에 담임교사와 상담 등을 통해 인정 기관, 활동내용 등을 확인 후 실시하여야 함.
- 나)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 및 인정 조건
  -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기관일 경우 인정
  - 노인요양병원 :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은 인정,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은 인정 불가
  - 노인요양원 :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시설은 인정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은 인정 불가 (**반드시 노인복지시설신고증 확인**)

-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인정 불가, 법인이 운영하는 병 의원 등 각급 의료기관 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병원 내 사회복지사,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팀) 등 운영)
  - 봉사활동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활동영역, 내용, 안전 등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어긋나면 인정 불가
- 다) 민간기관·시설기관에서의 봉사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기관(단체)여야 하고, 활동영역 및 내용이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함.
- 라) 봉사활동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 봉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는 교육 등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은 1시간 인정
  - 봉사활동 관련 단순 영상물 시청 등은 인정 불가
  - 연결되지 않는 소양교육, 회의 참석, 평가단 참여, 기자단 활동 등은 인정 불가
- 마) 단순 물품, 현금기부 및 물품 제작 관련 봉사활동
- 물품 및 현금의 단순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음
  - 단,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사전교육-캠페인-물품 및 현금 모금활동-기부-평가」의 학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거나, 외부기관과 학교가 연계하여 담당교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경우만 인정 가능함 (학교에서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함)
  - 물품 제작과 관련한 봉사활동은 이웃돕기활동 또는 캠페인활동에서 학생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제작 봉사활동은 인정가능(학교 연계는 필수 조건이 아님)
  - 예) 마스크 제작(캠페인활동), 목도리 제작(이웃돕기활동), 모자 뜨기(이웃돕기활동) 등
  - 단, 봉사활동이 「사전교육-제작-평가」 등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야 하며, 물품 제작비 등의 학생 부담없이 학생들은 제작에만 참여한 경우에 한하며 실제로 참여한 활동 시간만을 인정함. 제작 후 학생이 가져가는 경우 인정 불가
- 바) 활동비를 내고 참여한 봉사활동
- 활동비를 요구하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 불가
  - 어떠한 명칭으로든 비용(금품)을 납부하고 참여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음 (기부금 형태, 교통비, 식비, 재료비 등을 포함하며, 비용(금품)의 많고 적음과도 관계없음)
- 사) 현장체험학습 등의 출석 인정 결석 기간에 실시한 봉사활동
- 학교 밖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수업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인정
- 아) 신입생의 입학 전(해당 학년도 3월1일~입학식 전) 봉사활동 및 졸업생의 졸업 후(해당학년도 졸업식 이후~2월말) 봉사활동 인정
-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제3호에 학생이 재학 중 실시한 봉사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입학식 이전, 졸업식 이후라도 학년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입학식 이전의 봉사활동에 한해 사전계획서를 입학식 후 제출하여 사후 승인을 받음
  - 예) A중학교에서 B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된 경우 3월 1일에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B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A중학교의 졸업식 이후 2월말에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A중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종업식 이후에 실시한 1·2학년의 봉사활동 : 인정, 다음 학년의 담임교사가 정정대장을 통해서 입력
- 차) 봉사활동 시간에서 분 단위 인정 여부 :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입력하는 것이 원칙,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분 단위는 절사하여 입력함. 단 동일 기관의 같은 내용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경우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입력
- 카) 번역 :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 **200 원고지 5매당 또는 A4 1매를 1시간 기준으로 인정**. 이 경우 학생 본인이 직접 번역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경우만 인정함. 공식적 요청이라 함은 학교에 요청한 공문, 봉사활동 실적연계 사이트 일감 등록, 공개된 홈페이지에 일감 등록된 것 등을 의미하며 번역료 등을 받으면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음. 점자, 녹음 등 번역과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는 유사한 기준을 정하여 인정함.
- 타) 문화공연 준비 :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 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 연습시간은 인정, 공연 주체의 일상적인 공연 준비나 연습은 인정 불가
- 파) 행사참여 :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참여는 불인정**  
 ※ 정부지자체 기념식 등의 공공행사에 단순 동원 참여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은 제외
- 하) 선플 달기
  - 선플달기운동본부 <http://www.sunfull.or.kr>
  - 중학생 기준 50자 이상으로 20건당 일주일 최대 1시간 인정

※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한 기타 사례**

- 푸드마켓에 음식물 기부, 운동경기 또는 공연 관람, 문예작품(그림, 글짓기) 공모전 응모, 태극기 달고 인증샷 찍기, 인구조사 참여, 해외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영재교육 과정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결석생의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봉사활동확인서 발급을 통해 학생을 동원하는 각종 행사, 모바일 광고 열람 및 인터넷 신규가입자 추천, 봉사활동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활동 참여 등

※ **학생이 실무 담당자의 실인만 찍힌 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의 인정 :**

-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명의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인정할 수 있음.
- 위의 경우는 담임교사의 확인에 의해 봉사활동추진위원장의 실인으로 조치할 수 있음

※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의 인정여부는 「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인정**

※ **비대면 학생봉사활동 인정 기준(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봉사활동 인정
- 봉사활동이 「사전교육 - 실천 - 활동보고서 평가」 등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야 함
- 학생 본인이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했는지 주관기관이 확인(실시간 쌍방향, 영상 저장 등)한 경우 또는 봉사활동 실천과정의 사진(시작전, 실천, 결과)이 포함된 구체적인 활동보고서 제출 및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인정 가능

- 봉사활동한 시간만 인정 가능하며 **안전이 확보된 경우만 인정 가능**
- 학교는 봉사활동 주관기관의 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통해 승인 또는 인정

#### 4)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가)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부합

- 인정 가능 기관

공공부문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민간부문	민간기관(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시설(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나)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부합하는 기관

다)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인정 불가

#### 5) 봉사활동 지도교사의 역할

가) 봉사활동 업무 담당 교사

- (1)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운영계획 수립
- (2) 학년별 단계에 알맞은 프로그램 개발·운영
- (3) 학교 전체의 가족봉사, 사제동행 봉사 관련 계획 수립·운영
- (4) 봉사활동 관련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계획 수립 실시
- (5)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운영, 소양교육 주관
- (6) 평가 및 사후 관리

나) 학급 담임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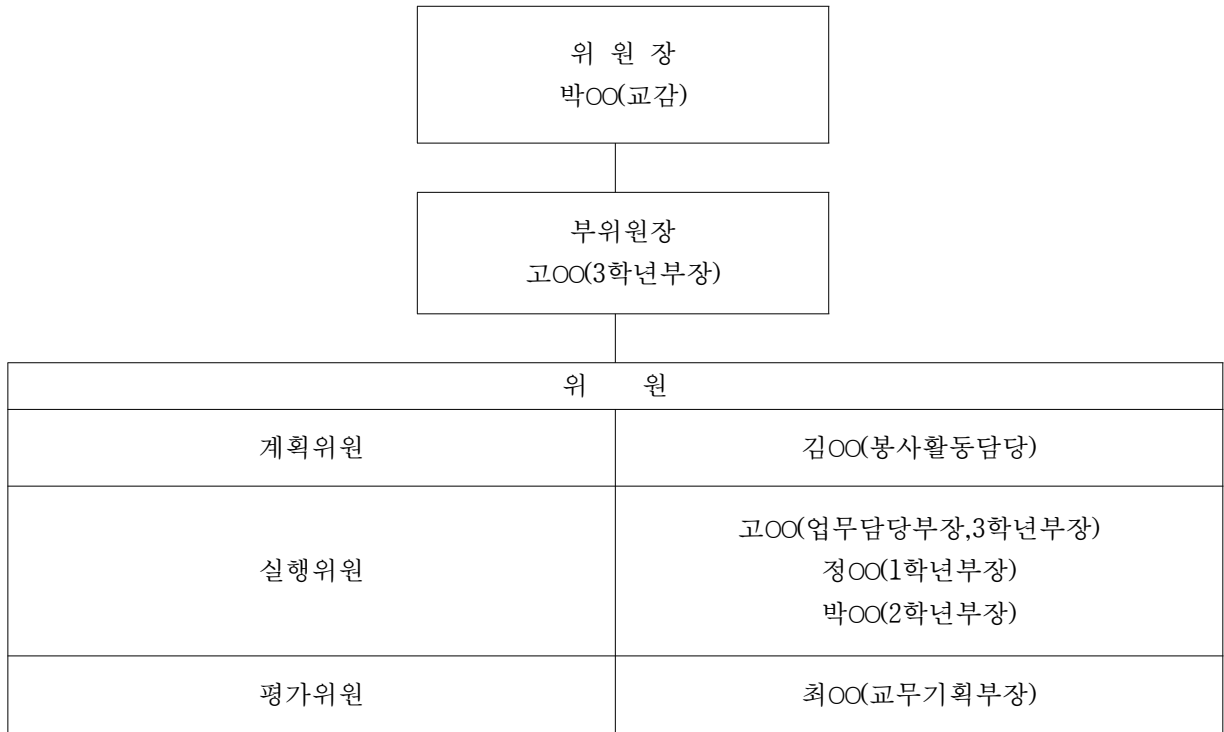
- (1) 학급 단위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 계획 및 관리 운영
- (2) 학급 학생들의 봉사활동 계획, 검토, 관리
- (3) 학생 개개인의 봉사활동 실시 상황 수시 점검·지도
- (4) 봉사활동 확인서 등 봉사활동 결과 점검 평가
- (5) 확인서 누가 기록 관리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다) 봉사활동 지도 교사

- (1) 학급, 동아리 등 그룹차원의 봉사활동 계획
- (2) 봉사활동 현장 입장 지도
- (3) 자발적인 활동을 위한 지도 조언
- (4) 사후 평가 및 추수 지도

## 마 고양중학교 학생봉사활동 추진위원회

### 1) 조직



### 2)

- 나) 위원장은 학생봉사활동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학생 봉사활동 업무를 총괄한다.
- 나) 계획위원은 학생들이 전 영역에 걸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상기관, 지역사회 여건, 학교교육과정, 활동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학년별 단계에 알맞게 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 다) 실행위원은 봉사활동 영역별·학년별 발달단계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담당한다.
- 라) 평가위원은 봉사활동 평가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 영역 기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3) 운영

- 가) 「학교봉사활동추진위원회」는 학생봉사활동 운영계획을 수립·추진한다.
- 나) 「학교봉사활동추진위원회」는 지역사회의 여건을 고려하여 봉사활동 유관기관 및 단체와 그 소속의 학부모, 지도자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 다) 「학교봉사활동추진위원회」는 지역사회의 봉사활동 관련단체, 봉사활동 수혜기관, 봉사활동 대상이 되는 각종 시설, 문화재 등의 실태를 분야별로 조사·파악하여 활용한다.
- 라)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가 학생 봉사활동의 교육적 의미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 마)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가 학생 봉사활동의 교육적 의미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 ) 학교 실정에 맞게 「학부모지도 봉사단」을 조직하여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삼위일체(학교, 학부모, 지역사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사) 전 교직원이 학생봉사활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학부모 지도단,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 봉사활동 관련단체 지도자, 명예교사 등을 활용한다.
- 아) 학생봉사활동 시행 전에 반드시 사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전교육에는 봉사활동의 필요성, 활동영역, 실적 인정기관 범위 등의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자) 학교별, 학년별로 봉사활동 영역과 시간을 단계적으로 계획하여 시행한다.
- 차) 봉사활동의 다양화를 위해 유관 단체와 효율적인 연계 체제를 구축한다.
- 카) 봉사활동 계획 수립, 학생봉사활동 지원방법, 봉사활동 실적인정(봉사활동 장소, 봉사활동 시간)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타) 협의된 사항은 협의록에 기록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다.

## 바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운영 계획

- 1)
  - 가)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 실시하는 봉사활동으로서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나) 단체봉사활동은 지역사회의 협조 하에 학생의 활동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여 전학년, 학급, 그룹 단위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다.
  - 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학생 봉사활동 담당 부서에서 주관하여 운영한다.
  - 라) 현장체험학습 후에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 마) 각 부서별 봉사활동은 본교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하여 해당 부서별(방송부, 또래친구도우미, 급식 도우미, 도서실 도우미 등)로 봉사활동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 2) 봉사활동 운영 시간

- 가)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의 봉사활동은 연간 10시간 이내로 편성한다.

### 3) 교육과정 내 학교 단체봉사활동 세부 계획

	학년	확인자	활동장소	내용	활동시간	활동영역	비고
3월 2일(수)	전학년	담임교사	각 학급	깨끗한 환경 만들기	1	환경보호활동	
7월 6일(수)	전학년	담임교사	각 학급	깨끗한 환경 만들기	1	환경보호활동	
7월 19일(화)	전학년	담임교사	각 학급	깨끗한 환경 만들기	1	환경보호활동	
8월 24일(수)	전학년	담임교사	각 학급	깨끗한 환경 만들기	1	환경보호활동	
10월 21일(금)	전학년	담임교사	각 학급	깨끗한 환경 만들기	1	환경보호활동	

등교주간 계획 및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4) 봉사활동 세부 추진 계획

	봉사활동명	봉사활동영역	담당교사	활동내용	활동시간	봉사시간 (연간 최대 10시간)
1		이웃돕기 활동	고00	학급 내 절전 및 문단속, 쉬는 시간 환기		학기별 5시간
2	멀티도우미	이웃돕기활동	김00	학급 내 기자재 관리	일과중	학기별 5시간
3	분리수거도우미	이웃돕기활동	최00	분리수거 및 주변환경 정리	일과중, 방과후	학기별 5시간
4	급식실 배식도우미	이웃돕기활동	공00	급식 지원 및 급식소 정리	점심시간	학기별 5시간
5	또래친구도우미	이웃돕기활동	조00	도움반 학생 생활 및 학습관련 도움 활동	일과중	학기별 10시간
	위클래스 도우미	이웃돕기활동	안00	위클래스 환경정리 및 행사 도우미	점심시간	연간 10시간
6	또래멘토링	이웃돕기활동	유00	학습 멘토링 활동	중식시간 및 방과후 시간	학기별 5시간
7	도서부	이웃돕기활동	지00	도서실 활동 보조 및 지원	점심시간, 쉬는시간, 방과후, 방학중, 도서관 개방시간	연간 10시간
8	교통 봉사 및 교내환경정화	캠페인활동 및 환경보호활동	신00	교통봉사 및 교내환경정화 활동	아침시간 점심시간 일과후	학기별 5시간
9	과학 한마당 운영 도우미	이웃돕기활동	이00	과학 한마당 운영 지원	일과중	연간 5시간
10	스포츠클럽 및 체육대회 도우미	이웃돕기활동	이00	스포츠클럽 및 체육대회 운영	일과중	학기별 5시간
11	시와 음악이 있는 이 곳 행사 도우미	이웃돕기활동	이00	시와 음악이 있는 이 곳 행사 지원	일과 후	연간 10시간
12	생활안전캠페인	캠페인활동	강00	생활 안전 캠페인	일과 전	학기별 5시간
13	실내질서캠페인	캠페인활동	강00	점심시간 실내 질서 캠페인	점심시간	학기별 5시간
14	방송반	이웃돕기활동	최00	각종 방송활동 지원	일과중	학기별 5시간
15	우꾸미	캠페인 활동	김00	사회적 경제 캠페인 활동 및 어울림 공간 정리, 미화 활동 등	일과 전,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방과후	연간 10시간
16	교과서배부도우미	이웃돕기활동	장00	교과서 분류 및 배부, 정리	12월-1월 일과중, 방과후	2학기 6시간
17	급식질서도우미	캠페인활동	신00	급식실 이동 시 질서 정리	점심시간	학기별 5시간

부서별 봉사활동은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학생이 실제 활동한 시간만큼 봉사시간을 부여하고, 학급 단위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은 각 학급 담임교사가 관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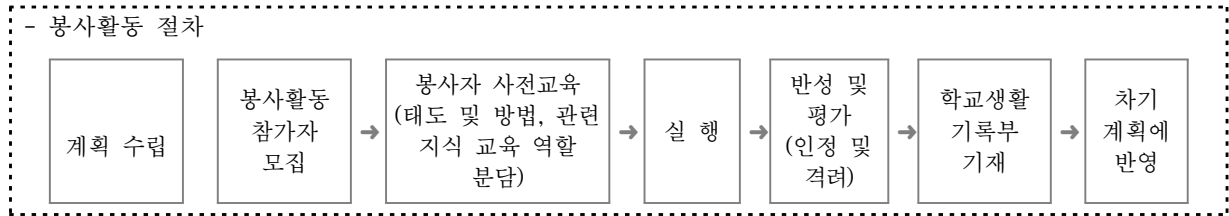
## 사 학교장이 허가한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운영 계획

1)

- 나)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학생 개인이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활동으로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다르게 방법과 절차가 지도되어야 한다.
- 나) 개인별 학생 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전 봉사활동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하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 승인으로 인정 가능하다.
- 다) 학생 개인이 봉사활동을 계획하고자 할 때 학급담임교사나 업무담당교사의 지도와 상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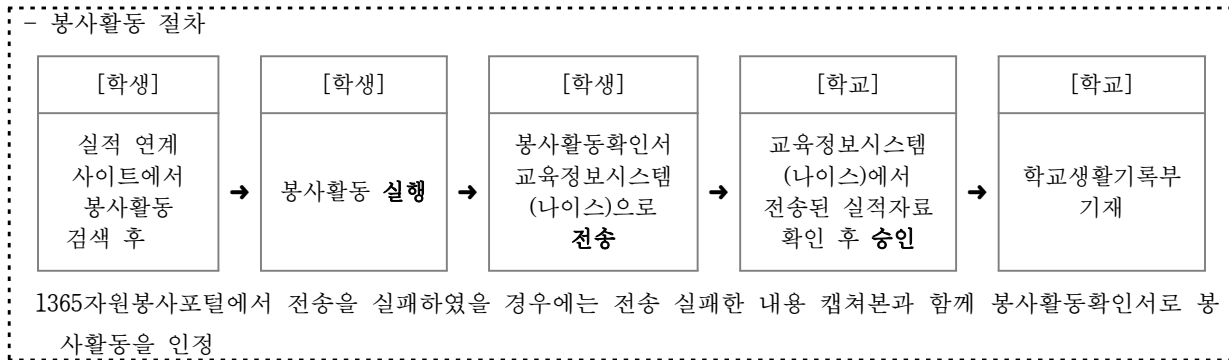
### 2) 봉사활동 절차

가)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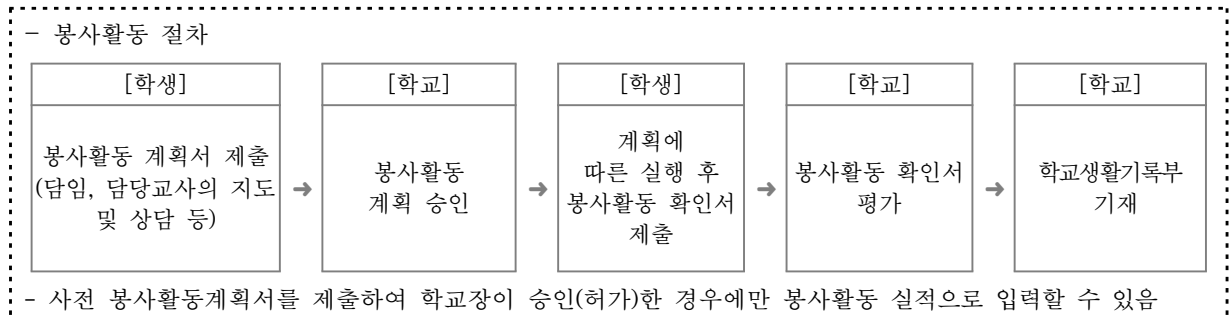


나)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나눔포털, VMS, DOVOL)를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



■ 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한다.



## 아 학생봉사활동 활동 영역

동	활동 목표	활동 내용(예시)
이웃돕기 활동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공동체 역량을 함양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구돕기활동 - 학습이 느린 친구 돕기, 장애 친구 돕기 등</li> <li>지역사회활동 - 불우이웃 돕기, 난민 구호 활동, 복지시설 위문, 재능 기부 등</li> </ul>
환경보호 활동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과 공공시설을 아끼는 마음을 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정화활동 - 깨끗한 환경 만들기, 공공시설물 보호, 문화재 보호, 지역 사회 가꾸기 등</li> <li>자연보호활동 - 식목 활동, 자원 재활용, 저탄소 생활 습관화 등</li> </ul>
캠페인 활동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질서, 환경 보전, 헌혈, 각종 편견 극복 캠페인 활동 등</li> <li>학교폭력 예방, 안전사고 예방, 성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 등</li> </ul>

### (정규교육과정) 외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봉사활동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이란 교내·외 학생이 자신의 진로나 흥미, 특기와 연계한 봉사활동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여 장기간 실시하는 것을 말함**

#### ○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의 진행 및 평가

- 기간 : 학생의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되 학기 단위 이상의 활동 권장
- 기관 및 장소 : 교내·외 학생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되, 프로젝트 봉사기간 동안 동일 기관 및 장소에서 활동
- 활동 내용 : 학생의 진로 및 흥미, 특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되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부합해야 함
- 절차

단계	실행 단계	평가 및 활용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목표 및 계획 수립 - 계획서 학교 제출 - 학생 봉사활동 추진위원회 심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행과 기록 (※ 담당교사 지도 및 확인)</li> <li>• 안전사고 유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서 작성 및 학교 제출 - 학생 봉사활동추진위원회 심의 - 봉사활동 실적 인정</li> </ul>

- 평가 : 학년말(학기말)에 단위학교의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활동 보고서 평가 및 봉사활동 실시 확인서 발급, 학교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 실적 기록

## 자 봉사활동 평가

- 1) 전학년 단체봉사활동 평가는 학기말에 토론이나 소감문 쓰기를 통해 봉사활동 내용을 반성하고 피드백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2) 부서별 봉사활동 평가는 운영 계획서에 평가방법을 포함하여 부서별로 특색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3) 분기별로 개인봉사활동에 대한 확인을 통해 실제 내용에 충실을 기하는 봉사활동이 되도록 한다.
- 4) 학교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봉사활동의 실적은 학교장이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5) 사전교육만 실시한 경우는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되, ‘활동내용’란에 그 사실을 기록한다.
- 6)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일 기관에서 같은 종류의 봉사를 지속적으로 한 경우는 학기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기록할 수 있다.)
- 7) 영리 업체, 미성년자 출입 제한 업소 등은 봉사활동 대상에서 제외한다.
- 8) 장애학생(특수교육대상자)으로 선정된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 수준에 맞는 대체 프로그램 운영 또는 예외 인정(중증장애학생 면제) 등 장애학생 봉사활동 배려 규정을 마련한다.

## 자 봉사자의 자세 및 지켜야 할 일

### 1) 봉사자의 자세

- 가) 자신이 관심을 가진 일부터 시작한다.
- 나) 자기 주위에 있는 일부터 시작하고 가족의 이해를 얻는다.
- 다) 겸손한 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한다.
- 라) 봉사의 가치를 믿고, 자발적,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한다.
- 마) 물질적 보수를 바라지 않는다.

### 2) 봉사자가 지켜야 할 일

- 가) 봉사대상에 대하여 정성을 다하고, 봉사하는 기관의 안내와 결정에 따른다.
- 나) 매사에 약속을 지키고, 신속하고 확실하게 일을 수행한다.
- 다) 겸손한 태도로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한다.
- 라) 봉사자 상호간에 서로 존중, 협력하고, 웃는 얼굴로 공손한 언어를 사용한다.
- 마) 안전에 유의하여 사고예방에 힘쓴다.
- 바) 몸을 청결히 하고 복장을 단정히 한다.

## 카 봉사활동 안전관리 계획

- 교사는 학생에게 부여한 봉사활동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 교사는 반드시 자신의 연락처를 알리고 학생들의 휴대폰 번호도 소지하여 항상 연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 지도교사는 계획에 의거 일정을 진행하고, 사전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한다.
- 사전에 요주의 학생과 요양호 학생을 파악하여 지도 방법을 강구한다.
-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필요한 안전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 인솔 시 학생들의 질서 유지와 인원 점검을 철저히 하여 누락된 학생이 없도록 한다.
- 인원 점검과 보고는 각 조 조장이 먼저 점검하여 지도교사에게 보고하고, 총 책임교사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이중 체제로 한다.
- 교사는 항상 학생과 동행하며 학생이 있는 곳에는 교사가 함께한다.
- 몸이 불편한 학생이 발생하면 인내를 강요하지 말고, 즉시 지도교사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사건 발생 시엔 신속하게 처리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한다.